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연구* **

김 용 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법학박사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아동 포르노의 구성요소와 해악성
- III. 아동포르노 규제 법률
- IV. 아동포르노 규제 입법 및 정책 비교
- V.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I. 들어가며

인간의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생식적 기능뿐만이 아닌 쾌락적 기능도 있다. 쾌락적 기능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다양한 성 산업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성 산업은 인간-특히 아동과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규제하고 있으나, 오히려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과 맞물리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상업적 섹슈얼리티로 대표되는 성 표현물(sexual representation), 즉 음란물(obscurity),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이하 '포르노'라 칭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아동포르노 등은 광범위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영화, 만화, 잡지, 소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포

* 심사위원 : 성낙현, 이정원, 김혜정

투고일자 : 2010. 8. 12 심사일자 : 2010. 8. 21 게재확정일자 : 2010. 9. 13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9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상업적 목적은 물론 당사자의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되고 있다. 특히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을 포르노에 등장시킨 아동포르노는 인터넷을 매개로 상업적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포르노가 급증하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한 아동이 많고, 제작이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들고, 소비층이 넓어 수익성이 높으며 총이나 마약, 담배 등에 비해 사실상 위험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아동포르노는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착취로 잠재적 희생자인 아동은 아동포르노 수요자 집단사이에서 교환상품으로 매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매매와 유사한 거래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¹⁾ 그러나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익명성은 이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아동성애자를 비롯한 아동포르노 수요자들이 그들의 방에서 희생자를 찾도록 지원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아동포르노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 crime)²⁾ 등에서는 아동포르노의 규제와 아동 학대/착취자에 대한 처벌 및 학대받은 아동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제사회³⁾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의 법과 법원은 아동의 권리보다는 성인의 권리를 우선하고 있다. 아동을 해로운 것과 불법적 것에서 보호하는 것은 성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및 사적 권리 등 기본적 자유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에 불구하고 아동포르노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허용함으로써 아동보호가 형식적임을 자인하고 있다.⁴⁾

1) Calos A. Arnaldo, Child Abuse on the Internet : ending the silence, UNESCO Publishing/Berghahnbooks, 2001, p.154.

2)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 검색일 : 2010. 7. 3.

3) 최근 아동포르노의 급증에 따른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가 잇달아 개최되고 있는데, 2007년, 「G8 Justice and Home Affairs Ministerial Meeting」 및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009년, 「The Rio de Janeiro Declaration and Call for Action to Prevent and Stop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및 「Ministers' Declaration, The Risk to Children Posed by Child Pornography Offenders G-8 Justice and Home Affairs Ministers」 등이 그것이다.

4) Calos A. Arnaldo, op. cit., p.170.

이러한 현상은 국제 미아와 착취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인 '국제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ICMEC라 칭함)의 2008년 세계 각국의 아동포르노 방지 입법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즉 187개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회원국 중에서 29개국만이 아동포르노 범죄 근절을 위한 충분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93개국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전무하다. 또한 아동포르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54개국도 자국의 법률에서 아동포르노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24개국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36개국은 유포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포르노의 소지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동포르노 방지 미흡국가로 분류되었다. 이에 최근 대검찰청은 인터넷 아동 성범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것이 일국에 한정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국제 범죄 양상에 따른 수사기법의 공유 필요성을 인식하여 ICMEC, 인터폴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아동범죄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⁶⁾한 바 있다. 한 사회의 선진화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어떻게 대하는 지를 통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특히 아동포르노의 해악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절/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아동 포르노의 구성요소와 해악성

1. 구성요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란물보다는 포르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칭함)에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동포르노의 구성요소-음란, 저속, 포르노, 음란물, 아동 포르노, 아동 그리고 실

5)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hild Pornography: Model Legislation and Global Review, 5th Edition, 2008, p.iii.

6) <http://www.kukinews.com>, 2008. 6. 29, 검색일 : 2010. 6. 10.

제가상아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음란, 저속

다양한 성 표현물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의 음란성(obscurity) 또는 저속한 표현 때문이다.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제243조), 그리고 이들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의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제244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범적 구성요소로서의 음란의 개념은 법관의 가치 충전적 해석을 필요⁷⁾로 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형법에 음란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에 대하여 헌법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⁸⁾ 그러나 음란물 판단여부가 재판의 대상이 될 때마다 음란개념의 명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의 논쟁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⁹⁾ 법원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⁰⁾

반면, 저속은 반드시 음란하지 않지만 그 표현이 외설스러워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그 표현과 유통을 제한하는 성 표현물을 말한다.¹¹⁾ 저속에 대한 개념도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실정법에서는

7) 임웅, 비범죄화 이론, 법문사, 1999. 95면 참조.

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구하는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다”고 판시하여 개념의 명확성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9) 박미숙,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55면 참조.

10) 대법원 2008.4.11. 선고 2008도254 판결.

의설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¹²⁾하고 있으며, 법원은 음란과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¹³⁾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음란과 저속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즉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다”고 하며,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음란이든 저속이든 그 기준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며, 아동의 입장에서의 해석 기준은 없이 단지 이러한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의 문제는 아동이 포르노에 노출되는 것도 있지만 아동이 포르노에 이용되는 것이 더 큰 해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음란 또는 저속의 개념은 대상(성인과 아동)에 따라 다르게 개념/해석되어야 한다. 즉 아동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게 하는 ‘선정적’,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음란’ 개념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음란규제와 아동 보호를 위한 성표현의 규제는 그 기준과 범위나 절차가 상이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¹⁵⁾ 아동포르노의 해악성은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실제아동이 경험한 해악을 의미한다. 성 도덕이라는 성인의 담론에서 아동포르노의 해악을 논하는 것은 실제 아동의 성적 학대의 피해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포르노는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성 도덕을 해친 범죄 이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1)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 II-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87면 참조.

12) 공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14)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4.

15) 박용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헌법논총 13집, 2002, 14면 참조.

2) 포르노, 음란물

포르노의 전형적인 의미는 창녀 및 그 상대방의 생활, 습관, 행동을 기록한 모든 것을 말하며¹⁶⁾ 현대적 의미는 인간의 육체 또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서술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하여 이용되는 성표현물로 볼 수 있다.¹⁷⁾ 이러한 포르노는 그 표현기법에 따라 하드코어포르노, 소프트코어포르노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으로 비폭력이지만 인간의 지위를 하락시키고 품위를 손상하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묘사한 성표현물, 아동포르노, 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성표현물(수간, 근친상간, 동성애, 혼음 등)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포함된 비폭력적 비품위 손상적 성표현물, 성기의 노출없이 비폭력적 비품위 손상적 성표현물, 나체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후자는 아동에게만 금지되지만 성인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허용되는 저속한 성표현물로 볼 수 있고 전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음란물이라 할 수 있다.¹⁸⁾

반면, 음란물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¹⁹⁾을 종합하여 정의하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소위 하드코어포르노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포르노는 음란물보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포르노는 에로틱하고 성적인 행동의 묘사를 지칭하지만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적인 행동의 묘사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음란물은 포르노이나 모든 포르노가 음란물은 아니다.²⁰⁾

한편, 독일은 형법상의 음란 개념의 불명확성-모호성, 광범위성, 자의성-을 극복하고자 음란(unzünftig)이란 용어 대신 포르노(pornographisch) 용어를 사

16) Vern Bullough and Bonnie Bullough, *Woman and Prostitution -A Social History*, Prometheus Books, 1987, p.35.

17) 이은영, *법여성학 강의*, 박영사, 2003, 221면 참조.

18) 박희영, *사이버아동포르노그래피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267-268면 참조.

19)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1973), 대법원 2008.4.11. 선고 2008도254 판결 참조.

20) 심희기, *아동포르노그래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제2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2003, 888면.

용하고 있으나 포르노의 개념은 단지 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모호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도 일찍부터 음란물 규제법이 발달되었으나 포르노에 대한 개념은 없고 단지 포르노의 개념을 폭력적이거나 여성비하적인 것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동어반복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²¹⁾ 한편, 우리 법원은 포르노를 음란물과 유사/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성인용 영상물, 성인물,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파일(또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²²⁾등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3) 아동포르노

1970년대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아동포르노(child pornography)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착취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인 대상의 포르노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해악성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포르노의 개념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²³⁾ 제2조(c)에서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가상으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아동 또는 주로 성적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성적 부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제9조(2)에서는 “아동포르노란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으로 보이는 자,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CMEC는 아동포르노에 “최소한(실제 또는 가상) 성적 노출, 행위, 연기를 하는 아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인터넷과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아동포르노 배포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 즉 필름, DVD, CD-ROM, 디스켓, CD-R 및 기타 전자미디어가

21) 박미숙, 앞의 논문, 259면 참조.

22) 대법원 2002.02.0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도40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노4220, 대법원 2005. 9.30. 2005도4051 판결 참조.

23) 2000년 5월 UN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무력분쟁시의 아동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후자의 의정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비준하여 동년 10월 24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포함되거나 이것에만 제한되지 않고 아동포르노가 배포될 수 있는 모든 방법, 인터넷 상의 이미지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등을 포함한 아동포르노를 소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²⁴⁾

한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아동

일반적으로 아동은 생존과 생활에서의 안전 및 보호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최소한의 시기까지 일정한 성인(대부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양육과 절대적 보살핌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이 공사 영역에서 애정과 보살핌,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가진 공동체 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할 책무가 가정, 사회, 국가에게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하여 실정법은 다양하게 표현-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어린이, 유아 등-하고 있는데, 최고 규범인 「헌법」은 아동이라는 용어 대신 조문에 따라 자녀, 연소자, 청소년이라는 용어²⁵⁾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위법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연소자, 어린이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18세 미만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규정하

24)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op. cit., p.1.

25)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고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 미만의 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²⁶⁾²⁷⁾에서는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은 만20세 미만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자,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자, 「공연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만10세 이하를 ‘어린이’로,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유아’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유엔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은 ‘아동’을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당사국은 최저 16세까지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ICMEC은 성적 동의연령과 관계없이 ‘18세미만’의 아동을 아동포르노의 목적상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가 다양한 것은 실정법(협약)마다 입법목적이 다르게 때문이겠지만, 이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이라고 한다면, 관련법간의 연령 통일화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은 구분하되, 성범죄의 대상되는 아동의 연령은 「형법」의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의 범주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18세 이하로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동법은 본래 법명이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아동성폭력이 증가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2009. 6.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분리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병렬관계로 두고 있다.

27) 헌법재판소는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된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등 :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5) 실제아동과 가상아동

아동포르노의 객체인 아동은 성행위 등의 표현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한 자이다. 여기서 논의되어 할 것은 어떤 포르노에서 성인이 아동의 형상을 하였든가,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 의사(합성)사진 등 가상의 아동을 이용한 경우에도 아동포르노로 규제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하여 가상의 아동이 실제하는 특정 아동을 암시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성적 유희 대상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²⁸⁾ 즉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실제아동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픽사진이나 만화제작 또는 디지털방식으로 거의 실제 사진정도로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아동이 아닌 가상의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포르노는 아동과 사회에 2차적 피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포르노 역시 아동을 비하하고 아동성애자 및 아동학대자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확장하는 등의 범죄성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²⁹⁾³⁰⁾ 그리고 아동처럼 보이는 사진을 제작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이때는 본래의 사진이 아동을 모델로 하였는가는 따지지 않고 비록 의사사진이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합성사진의 제작이나 소지 자체가 잠재적인 아동학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¹⁾

반면, 가상의 아동포르노가 불법행위를 고무시킨다할지라도, 장래 아동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고, 가상의 아동포르노와 같은 대체물은 포르노 제작자들이 처벌의 위험성으로 선택할 여지가 많아 오히려 실제 아동포르노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³²⁾ 즉 가상의 아동을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에는 실제하는 아동을 확대·착취

28) 전형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래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32면 참조.

29) U.S. v. Hilton, 167 F.3d 61 1st Cir. 1999, U.S. v. Acheson, 195 F.3d. 645 11th Cir.1999, U.S. v. Mento, 231 F. 3d, 4th Cir.2000, U.S. v. Fox, 248 F.3d 394 5th Cir.2001.

30) 같은 입장,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43면 참조.

31) ヤーマソ・アクデニス, チャイルドポルノグラフィ,サイバーロー研究会編, サイバースペース法, 日本評論社, 2000, 142-146面.

32) Aschroft v. Free Speech Coalition, 122 S. Ct. 1389, 2002.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아동포르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³³⁾ 그러나 컴퓨터 합성과 같이 쉽고 값싼 수단에 의한 아동의 실제와 같은 이미지가 실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멈추게 한다거나 심지어 감소시킨다거나 당해 성적 학대를 시각적으로 녹화하는 일을 멈추거나 감소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³⁴⁾ 독일은 형법 제184조에 실제로 행위를 하거나 실제와 유사하게 묘사한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와 유사한 묘사'라는 구성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실제와 유사한 행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아동보호라는 차원에서 실제의 아동포르노와 동일하게 가상의 아동포르노가 거래되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³⁵⁾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이 실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에 의한 성적 행위, 의사사진 등 가상의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³⁶⁾³⁷⁾ 이러한 법과 법원의 입장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범력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다. 아동의 이미지를 변형시키거나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용이해진 기술발전을 고려한다면 실제 아동 포르노만을 금지하는 법률은 비효과적이다. 가상의 아동을 이용한 포르노를 불법화하는 것은 실제로 가상이든 어떠한 형태의 아동에 대한 성 학대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만일 가상의 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포, 소지를 용인한다면 아동 성 학대를 묘사하는 이미지를 둔감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아동의 성적 객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³⁸⁾

2. 해약성

33) 심희기, 앞의 논문, 892면 참조.

34) 법무부,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2008, 734면, 재인용.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PUBLIC LAW 108.21, APR.30, 2003.

3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Ⅰ)-독일·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1, 55-56면 참조.

36) 이와같은 입장은 헌법재판소 202.4.25. 선고 2001헌가27.

37) 같은 입장,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No. 00-795.

38) Suzanne Ost, Child Pornography and Sexual Groom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125.

아동포르노는 성인포르노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다. 성인포르노는 그 음란성 여부나 포르노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여하에 따라 법률상 허용될 수도 있는 것과는 달리 아동포르노는 보전할 만한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³⁹⁾ 아동포르노는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장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반적 윤리기준으로 볼 때에도 정상적인 인간의 성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일탈행위로서 성인포르노보다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아동포르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켰을 것, 진지한 문학적·예술적·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을 것, 아동이 포르노 제작 과정에서 육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었을 것 등은 중요하지 않으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묘사한 것이면 충분하다할 것이다.⁴¹⁾

이러한 아동포르노의 범죄성은 제작·반포·배포·수출입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소지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⁴²⁾과 아동포르노라 할지라도 이를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입법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잠재적 위험성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위험범의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⁴³⁾ 그러나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동포르노 소지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4항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포르노의 소지까지도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동포르노가 아동에 대한 성 학대(child abuse)/성 착취(child exploitation)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동포르노는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특히 인터넷 상의 아동포르노는 아동의 ‘성적 학대의 항구적 기록’이라고 불리만큼 그 화상이 일단 인터넷상에 유출되면, 가령 피해를 받은 아동 자신이 보호되었다고 하더라도 화

39) 원혜숙,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10면 참조.

40) 박희영, 앞의 논문, 265면.

41) 박미숙, 앞의 논문, 267면 참조.

42) 박강우, 형법상 음란개념의 재구성,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간행위원회, 오선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1, 276면.

43) 박미숙, 앞의 논문, 267-268면 참조.

상의 복제가 여기저기로 유통되어 회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아동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범람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풍조를 조장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최근에는 고화질 화상의 고속 대량 유통, 피해아동의 저연령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이용의 확대, 신규 화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로 학대 화상을 배포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포르노가 아동 성범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도 있으나, 지난해 3월, 발생한 안양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동영상 등 동영상 500여건과 수만 건의 음란물이 저장된 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져⁴⁴⁾ 아동포르노가 아동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위험성은 마약이나 총기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아동포르노 규제법률

1. 서

우리나라는 아동포르노에 대하여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에 따르면 아동포르노의 주요 제작국으로 보고되었다.⁴⁵⁾ 즉 우리나라는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아동포르노 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전세계 아동포르노 생산의 2.1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생활도구로서의 인터넷은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한다. 그러한 가운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들은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성적 유혹을 받게 된다. 그것은 수백만명의 아동을 의미하고 또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수천명의 범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 테러나 마약, 인신매매 및 성매매가 대부분 인터넷을

44) <http://www.sisakorea.kr> 검색일: 2010. 7. 9.

45)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53면 참조.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아동 성범죄, 특히 아동포르노의 인터넷 상의 거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아동포르노/포르노는 제작에서 유포·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유포하는 자는 주로 지하 사업자이며 최근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유포되는 경우도 있어 그 규모를 추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피해아동의 수나 피해정도에 대한 추정치도 거의 전무하다.

2. 규제법률

1) 형법

「형법」은 일반적인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아동이 포르노를 접촉함으로써의 피해 및 아동을 이용한 포르노에 대한 규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오프라인상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할 뿐, 인터넷상의 포르노 규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대적·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⁴⁶⁾ 판시함으로써 포르노 규제의 모법인 「형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⁴⁶⁾ 따라서 인터넷상의 포르노 및 아동포르노 규제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즉 포르노의 제작·반포·판매 등의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차적 규율을 하고 있는 「형법」에 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2) 아동·청소년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4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포르노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포르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음란물과 포르노를 구분하고, 아동포르노와 음란물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⁴⁷⁾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차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하는 아동포르노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왕의 아동이용음란물과 구분되는 아동포르노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아동 성범죄 범주에 아동포르노를 포함함으로써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 제8조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아동포르노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자도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 포르노의 단순소지의 불처벌과 달리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포르노 제작·수출입·판매자 및 수요자 그리고 아동을 아동포르노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자는 모두 공범관계이다. 동법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범죄의 효과성에 따라 형벌을 구별하고 있으나, 실질적 공범 관계인 이들은 제작자이면서 수입·수출자, 알선자일 수 있으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수요자에 의해 지속된다. 따라서 수요자/소지자의 수요/소지행위는 아동포르노를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범으로서 처벌함에 있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으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혔고, 이와 같은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의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⁴⁸⁾ 그러나 동법에는 인터넷상 아동

47) 심희기, 앞의 논문, 887면 참조.

포르노의 규제조항은 없다. 더욱이 동법 제2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하여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즉 실제 아동의 출현에 한정하고 있어 가상/의사의 아동을 이용한 아동포르노는 동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의사사진을 이용한 아동포르노의 해악성을 감안한다면 가상/의사 사진까지도 아동포르노 범주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동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 표현물을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실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그러한 가상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의 해석상 위헌 여부 판단의 문제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⁴⁹⁾ 즉 향후 아동포르노의 한 형태로서 의사사진 등 가상의 아동포르노의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8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9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2조 알선 영업행위 등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등만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구별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유형의 폭행·협박이 없었다하여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와 같은 형태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하더라도, 공포감이나 경제적 종속, 기망 등은 실질적인 폭행·협박에 해당된다. 더욱이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은 폭행과 협박, 곤경에 빠뜨리는 위계 등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

48)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49) 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가 27.

50)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제267회 국회(임시회의), 2007. 4. 24.

력범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광의 성범죄와 협의의 성폭력 범죄의 구별은 대상이 성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구분해서는 안될 것이다. 범죄의 양상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피해의 정도를 나누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동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를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즉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제243조 음화 등의 반포 등, 제244조 음화 등의 제조 등, 제245조 공연음란의 죄, 제288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제297조 강간, 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 강도강간의 죄 그리고 동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성폭력 범죄의 범주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보호영역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 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보호영역을 좁힌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아동포르노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의 아동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 범죄의 구별을 없애고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은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발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 기동수사대는 여성가족부 원스톱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담 수사관과 여경기동수사대를 통합한 것으로, 전국 17개 지방청에 한 곳씩 만들어진다.⁵¹⁾ 광의의 성범죄이든 협의의 성폭력이든 피해자인 아동에게는 영구적인 가장 잔인한 범죄이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51)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 2010. 5. 10.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도 특별히 아동을 이용한 아동포르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단지 일반적인 포르노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동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동법 제12조의 2를 신설, 아동포르노를 제작·반포·판매·임대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동법 제2조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보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구매자가 포르노/아동포르노를 실행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이미 이러한 성매매 이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법에 아동을 포르노에 이용하기 위하여 인신매매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 유사한 형량으로 가중처벌 되도록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IV. 아동포르노 규제 입법 및 정책 비교

국제적으로 아동포르노 사이트는 2001년에 약 10만개, 2003년에는 약 20만개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⁵²⁾ 이러한 증가의 의미는 아동포르노가 상업적으로 높은 이익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성적 착취가 더 이상 소아성애자간의 영상물을 주고받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자 조직화된 범죄로 수많은 사업가들 존재한다는 것⁵³⁾을 의미하며, 아동이 상품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영국

영국은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아동포르노를 엄하게 금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미국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⁵⁴⁾ 우선, 아동포르노 규제법으로는 1978년 「Protection of Children Act: PCA」 과 1988년 「Criminal Justice Act : CJA」, 2003년 「Sexual Offences Act: SOA」 등이 있다. PCA는 ‘아동의 의사/가상사진(pseudo-photograph)을 촬영하거나 촬영 또는 제작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한 사진을 유포하거나 전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그와 같은 사진들을 출판하거나 출판을 야기하는 행위- 제작자, 공급자, 소지자 모두가 처벌된다-’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과 「European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를 절충하여 18세이하의 자로 하고 있다. 1994년, PCA를 보완한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 CJPOA」 에서 PCA상 사진의 개념에 CD, 기타 컴퓨터에 사용되는 매체 및 인터넷상의 화상을 포함하였다. 즉 실제로 아동이 출연하지 않았으나 아동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된 표현물이나 컴퓨터에 의하여 아동이 표현된 경우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사진 포함- 아동포르노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 아동포르노는 실제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R. v. H. 사건⁵⁵⁾에서는 가상 아동포르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아동의 얼굴이 아동포르노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아동에게 ‘심리적 피해(psychological harm)’

52) 박기범, 앞의 논문, 152면 참조.

53) Ernie Allen, Law Enforcement Needs to Do More to Stop Child Pornography, At Issue-Child Pornography, GALE CENGAGE Learning, GREEN HAVEN PRESS, 2009, p.20.

54) 전형미, 앞의 논문, 53-54면 참조.

55) [2005]EWCA Crim. 3037.: 교사가 아동포르노 이미지에 아동들의 사진을 덧붙였던 사건으로, 해당 아동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 사건임.

를 끼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가상 아동포르노에 사용된 아동의 얼굴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없었으나, 이후 그 아동을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 발생한 ‘간접적 피해(consequential harm)’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⁵⁶⁾ 한편, 아동에 관한 음란한 사진을 소지하는 행위는 CJA에 의거 경죄로 처벌되며,⁵⁷⁾ CJPOA는 단순 소지 위반에 가상/의사사진까지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형량도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SOA는 아동포르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법으로 “아동에 대한 외설스러운 이미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아동은 아동포르노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을 위해서 아동과 접촉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다.⁵⁸⁾ 즉 SOA 제15조는 18세 또는 (A) 이상의 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1) 최소한 2차례 이상 사전에 또다른 사람(B)와 만나거나 또는 이야기를 하든, 그는 (i) 의도적으로 B를 만나거나 또는 (ii) B를 만나려는 의도로 어디든 가거나 (2) 그 당시 그는 B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의도였거나, 또는 B의 입장에서 그를 만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장소에 상관없이 행해진다면, 이때 (3) B는 16세 이하이고, (4) A는 B가 16세 또는 그 이상이라고 확신한지 않았을 것⁵⁹⁾- A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sexual grooming 등을 하고자 아동을 만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포르노 관련 범죄에 대하여 2001년 1월까지의 기소된 자에 대한 구형은 3년이었으나, 이후부터는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⁶⁰⁾

반면, 시민과 사업주, 기관 등도 인터넷상 아동포르노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내용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등급협회(ICRA :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⁶¹⁾,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 특히 아동 포르노 규제를 목적으로 1996년 9월 출범한 인터넷감시재단(IWF : Internet Watch Foundation)이 대표적이다. 특히 IWF는 영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모

56) Suzanne Ost, op. cit., pp.127-128.

57) 이건호, 앞의 논문, 88면 참조.

58) Suzanne Ost, op. cit., p.62.

59) Suzanne Ost, op. cit., p.71.

60) 최근 영국에서 아동포르노의 제작 등, 소지, sexual grooming으로 처벌된 수치

니터링하고, 인터넷의 유해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14인의 전문가가 'IWF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행동강령을 제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⁶²⁾

2. 미국

미국은 아동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77년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을 제정·시행하다가 1984년 「Child Protection Act」로 개정하였다. 동법은 실제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물건은 음란(obscene)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보호객체로서의 아동은 18세미만으로 하였다. 이후 1986년 「Child Sexual Abuse and Pornography」를 제정, 아동포르노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의 제작 및 이용을 금지하였다. 1988년 「Child

위반 유형	처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아동포르노 및 사진 촬영/제작	경고	15	14	26	31	35	38
	기소	80	111	116	175	284	398
	유죄	69	103	82	139	218	289
아동포르노 및 사진 소지	경고	16	17	18	34	25	25
	기소	125	124	167	163	129	88
	유죄	79	81	105	99	77	51
위반 유형	처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아동포르노 및 사진 촬영/제작	경고	63	239	201	195	168	
	기소	582	1,464	1,097	1,101	937	
	유죄	434	1,048	978	958	768	
아동포르노 및 사진 소지	경고	53	205	162	151	147	
	기소	156	326	200	184	171	
	유죄	97	239	184	196	166	
sexual grooming	경고	*	*	2	5	10	
	기소	*	*	9	28	43	
	유죄	*	*	3	25	36	

* 자료: RDS-Offending and Criminal Justice Group, Home Office, Ref:IOS 503-03(1996-2001), DS-Offending and Criminal Justice Group, Home Office, Ref:IOS 078-08(2002-2006).

- 61) 아메리카온라인유평, 버텔스만(Bertelsmann) 파운데이션, 브리티시텔레콤, 데몬인터넷, 유로ISPA,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정보통신업체들이 결성한 단체임.
 62) 국회 입법조사처,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현안보고서, 2008.12, 11면 참조.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를 제정하여 아동포르노를 운송, 유포, 수신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불법화하였고 아동포르노를 생산하기 위하여 아동을 매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아동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어 1990년 「Child Protection Restoration and Penalties Enhancement Act」를 제정하여 아동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보여주는 것도 금지하였다. 즉 아동포르노를 3개 이상 소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96년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를 제정하여, 전자, 기계 등 어떤 방법으로 생성한 것이든 아동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 사진, 그림, 필름, 비디오 등 아동포르노의 고의적인 판매, 소지, 유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포르노를 제작하는 행위는 그것이 실제하는 아동이든 가상의 아동이든 고의적인 묘사행위는 모두 처벌한다. 이는 실제하는 아동의 사진을 복제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아동의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합성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 컴퓨터그래픽, 어리게 보이는 성년을 아동인 것처럼 보이도록 표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의 법률이 실제아동을 이용하여 음란물 등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만을 규제하였다면, 동법은 아동포르노 자체가 해악이라고 보고 실제든 가상이든 아동을 이용한 포르노는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⁶³⁾

한편, 연방법원에서 온라인상의 아동 성적 유인은 최소 10년이상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50개 주가 인터넷상의 아동에 대한 성 유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은 벌금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하다. 즉 34개 주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범죄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14-17세인 경우, 15개 주에서는 경범죄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은 인터넷상에서 가장 유인되기 쉬운 십대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9개 주에서는 온라인상의 유인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15개 주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⁶⁴⁾ 따라서 인터넷상의 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 주들은 연방법의 규범에 따라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63) 이성덕, 표현의 자유 그 한계어디까지인가, -미 연방대법원 '아동포르노방지법' 위헌판결', JURIST, 2006, 75-76면 참조.

64) Ernie Allen, op. cit., pp.19-20.

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유인에 대하여 중범죄 처벌하도록 연방 형량 지침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1999년,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하여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포르노 제작·소지·운반·수출입 행위, 전자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내지 6항).

한편, 2008년 1월, 内閣府의 「インターネット上の安全確保に関する世論調査」에 의하면, 경찰 단속을 요구하는 인터넷상의 범죄로서 ‘아동매춘·아동포르노 등 아동이 성적 피해를 입는 범죄’가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게 요구하는 대책으로서는 ‘경찰에 의한 감시의 충실·강화’가 51.0%, ‘인터넷 접속업자에 대한 협력 요청’이 43.0%를 차지하지만, 인터넷 공간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2008년, 사업자에게 필터링(선별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平成20年 法律 第79号)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⁶⁵⁾ 이후 경찰청은 2008년, 제3차 아동의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국제회의의 행동지침에 따라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행동지침을 통지하였다.⁶⁶⁾ 즉 유사/가상포르노를 포함한 아동포르노의 구입, 소지, 열람 등의 처벌 강화, ISP 등에 대한 경찰에의 아동포르노 통보 및 삭제의무화, 아동포르노의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넷 거래의 정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 가해자와 피해자 추적을 위한 획기적인 수사기법 연구, 부적절한 아동들의 영상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이용의 용이화, 수사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국제연계추진 등이다.

또한 2009년 6월,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都道府県 경찰에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65) 警察庁, 児童ポルノの根絶に向けた重点プログラム～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児童ポルノの拡散防止を焦点に～, 2009. 6.

66) 警察庁 生活安全局 少年課, 広報資料-第3回児童の性的搾取に反対する世界会議における成果文書について-, 2008. 4. 23.

다.⁶⁷⁾ (1) 단속 추진으로는, 경찰청의 화상분석반 설치 등 정보분석 기능의 강화, 수사관의 외국수사기관 연수 참가 등을 통한 새로운 수사 방법 도입, 외국 수사기관 등과의 연계강화 및 공동수사 추진, 사이버패트롤과 구매수사(경찰이 위장하여 구매함)강화, 아동포르노 애호자그룹의 철저 검거 등이다. (2) 유통방지대책의 추진으로는, 아동포르노유통방지협회 내 아동포르노 게재 주소록 작성 관련단체(가칭)설립과 블로킹 실시를 위한 협력, 아동포르노 게재 주소록 작성 관리단체에 정보제공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방지대책 검토,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계발활동, 인터넷하라인센터를 통한 삭제의뢰의 지속적 실시, 검거시 삭제철저 등이다. (3) 피해아동지원 추진으로는, 피해아동의 발견·보호활동의 강화를 위해 화상분석 구축 및 분석방법 검토, 피해아동을 배려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검토, 아동포르노사범 등의 특성을 파악한 후 피해아동지원방법 검토,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실시, 성실한 상담, 원격지에 거주하는 피해 아동 지원 등이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목표로 관계부처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V.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아동은 자의든 타의든 아동포르노의 침투적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아동포르노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착취의 부산물이며 그 자체로 주요한 이유를 가지지 못한다. 아동 성 착취는 살인, 고문, 대량학살 등과 같은 비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성매매와 같은 직접적 형태의 아동 성 착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포르노와 같은 간접적 형태의 아동 성 착취에도 적용하여야 한다.⁶⁸⁾

이와 같은 아동포르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실정법상의 개념 및 범주의 통일이 필요하다. 실정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포르노/아동포르노에 대한

67) 警察庁 生活安全局 情報技術犯罪対策課少年課, 広報資料, - 児童ポルノの根絶に向けた重点プログラムの策定について-, 2009. 6. 18.

68) Calos A. Arnaldo, op. cit., p.115.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아동포르노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상의 아동포르노의 경우도 잠재적인 범죄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포르노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포르노의 제작 및 유통과정이 당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양형도 이에 대한 제작 및 유통행위가 현실 및 장래에 아동에 미칠 해악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⁶⁹⁾

셋째, 현행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와 성범죄의 구분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할 것이다. 넷째, 정책적으로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시민신고제 실시 등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상 소아애자와 아동포르노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Hotline for Child Pornography on Internet'이나 덴마크처럼 일반시민의 인터넷을 통하여 경찰에게 아동포르노 유포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법 등이 고려해 볼만 하다. 다섯째, 아동포르노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아동포르노 제작국으로서 오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포르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등이 전무하다. 인터넷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제작·유통·소비의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내의 제작 및 소비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곱째, IT 및 ISP, 금융기관에 아동포르노 관련 사이트나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과 정책의 마련도 시급하다.

주제어 : 성 표현물, 아동 포르노, 성 학대, 성 착취, 음란, 저속, 실제아동, 가상아동, 인터넷

69) 奥村徹, 児童ポルノ寫眞集販賣事件, 岡村久道編, サイバー法 判例解説, 商事法務, 2003, 82-83면 참조.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논문 >

- 박강우, 형법상 음란개념의 재구성, 오선주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1.
- 박기범, 아동성범죄와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그래피,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박미숙,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박용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헌법논총 13집, 2002.
- 박성연, 언론정보법연구 II-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 박희영, 사이버아동포르노그래피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 심희기, 아동포르노그래피와 한국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원혜욱,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이성덕, 표현의 자유 그 한계어디까지인가, -미 연방대법원'아동포르노방지법; 위헌판결', JURIST, 2006.
- 이은영, 법여성학 강의, 박영사, 2003.
- 전형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래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제267회 국회(임시회의), 2007.
- 법무부, 영.미의 성범죄법과 양형기준, 20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I)-독일·일본에
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1.
- 콘라드 헛세 저, 계획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외국문헌>

- Calos A. Arnaldo, Child Abuse on the Internet : ending the silence, UNESCO Publishing /Berghahnbooks, 2001.
- Ernie Allen, Law Enforcement Needs to Do More to Stop Child Pornography, At Issue-Child Pornography, GALE CENGAGE Learning, GREEN HAVEN PRESS, 2009.
-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Child Pornography: Model Legislation and Global Review, 5th_Edition, 2008.
- Suzanne Ost, Child Pornography and Sexual Groom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Vern Bullough and Bonnie Bullough, Woman and Prostitution -A Social History, Prometheus Books, 1987.
- 日本 警察庁, 児童ポルノの根絶に向けた重点プログラム~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た児童ポルノの拡散防止を焦点に~, 2009. 6.
- 日本 警察庁 生活安全局少年課, 広報資料-第3回児童の性的搾取に反対する世界会議における成果文書について-, 2008.4.23.
- 日本 警察庁 生活安全局 情報技術犯罪対策課少年課, 広報資料, - 児童ポルノの根絶に向けた重点プログラムの策定について-, 2009.6.18.
- 奥村徹, 児童ポルノ寫眞集販賣事件, 岡村久道編, サイバー法 判例解説, 商事法務, 2003.
- ヤーマソ・アクデニズ, チャイルドポルノグラフィ, サイバーロー研究会編, サイバースペース法, 日本評論社, 2000.

<관련 site>

- <http://www.sisakorea.kr>
- <http://www.scourt.go.kr>
- <http://www.scourt.go.kr>
- <http://www.moleg.go.kr>
- <http://www.kukinews.com>

<http://conventions.coe>

<http://www.yonhapnews.co.kr>

<http://www.uscourts.gov>

[Abstract]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child pornography*

Kim, Yong-Hua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ild pornography is a crime to violate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involved. becomes even more critical when available on the Internet due to its vicious nature of circulating, repeating and reproducing itself, making it almost uncollectible. The so-called 'permanent record of sexual abuses' , therefore, continue to cause significant damages on the children. Moreover, the flood of child pornographic materials fosters the tendency to objectify children as sexual objects, eventually bring about horrific consequences for the children to be exposed on various crimes.

The oversupply of child pornographic materials seems to be caused by several reasons. Above all, lots of children are approachable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difficulty. Secondly the materials can be produced with ease and cheap cost, whereas highly profitable with wide ranges of consumers. And thirdly, they are supposed to have no actual factors causing significant dangers unlike guns, drugs, cigarettes. Child pornography itself, however, should be considered not only an 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but also a critical sexual offence destroying social norms of sexuality.

Key words : sexual representation, child pornography, child abuse, child exploitation, obscene, indecent, real child, virtual child, interne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2009.